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No. 2021-					
소관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처 (○○팀)	2021년	시정	-	-	주의

제 목 :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부정사용 조사

1. 현황

○○○○○○처 ○○팀 ○○직 ○○○ ○○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휴가 부정사용 관련 제보를 조사한 결과, 하기와 같이 공사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위법부당 내용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사용 시, 공사지침 위반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사용에 따른 공사의 지침은 코로나 백신접종 당일에 한하여 의료기관 이동거리, 공사 복귀시간, 이상반응 관찰시간을 고려하여 최대1일 공가사용이 가능하며,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일 1일은 증빙없이 병가처리 하고, 이상반응 지속시 접종 3일째 부터는 증빙에 의한 병가사용이 가능하다.

○○팀 ○○직 ○○○ ○○은 상급자에게 백신접종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21. 0. 0.일 15시~16시 개인 시간제 휴가를 사용하여 회사인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을 받은 후 공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고, 0. 00.일 아침 몸이 불편하여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자에게 유선으로 백신접종을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처분요구내용

○ 이러한 행위는 공사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직원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 제6조 제7호에 의거하여 “주의” 처분한다.

○ 코로나 백신접종 당일(0. 0.일) 공가 사용이 가능하나, 1시간의 개인 시간제 휴가를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0. 00.일 1일의 기 병가 사용을 7시간의 시간제휴가 사용으로 변경할 것을 “시정” 처분한다.

[○○팀 ○○직 ○○○ ○○ : “주의” 및 “시정” 처분]

(시정할 사항 : 0. 00.일 1일의 병가를 7시간 시간제휴가 사용으로 변경). 끝.